

10-33 첨단영상대학원 학사 내규

1999.09.01. 제정

2021.05.27. 개정

주무부서 : 첨단영상대학원 교학지원팀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제1조(목적) 본 내규는 학칙 제 4 장 대학원 학사운영의 시행에 필요한 첨단영상대학원(이하 “대학원” 이라 한다)내의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2조(운영위원회) ① 본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첨단영상대학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최종 승인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의 설치·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본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장학사정에 관한 사항
6. 교원 업적 심의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7인으로 구성하며, 구성원은 아래와 같다. <개정 2020.05.14.>

1. 위원장 : 대학원장(당연직)
2. 위원
 - 가. 학과장(당연직) <신설 2020.05.14.>
 - 나. 전공주임교수(당연직)
 - 다. 기타 대학원장이 위촉한 위원

[본조개정 2017.4.27., 2018.3.22., 2018.11.29.]

제3조(기타위원회) ① 본 대학원에 중요사항을 기획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4.27.>

②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4.27., 2018.11.29.>

제3절 강사 임용 <본절 제목 개정 2020.05.14.>

제4조(자격 및 임용절차) 강사의 자격 및 임용절차는 「강사 임용에 관한 규정」 및 「강사 임용에 관한 시행세칙」을 따른다.

[본조 제목 및 전문 개정 2020.05.14.]

제5조(온라인 지원 및 서류접수) ① 강사의 공개채용은 온라인으로 지원사항 등을 접수하며, 교학지원팀에 서류 제출한다.

② 온라인 지원 등록내용 또는 서류에 중대한 오류나 허위가 있는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온라인) 지원서
2. 학력 및 경력증명서
3.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또는 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

[본조 제목 및 전문 개정 2020.05.14.]

제4절 전공주임교수 및 학과장 임면 위촉

제6조(자격) 이 규정에서 대학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수 중에서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거 총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7.4.27., 2018.11.29.>

제7조(임기) 이 규정에서 전공주임교수 및 학과장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장 입학

제1절 입학전형 시행 세칙

1. 일반 전형

제8조(목적) 이 시행 내규는 중앙대학교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4장의 제72조 대학원 입학전형에 따른 학생의 선발에 필요한 세부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학생의 선발) ① 석사학위과정, 제작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으로 구별하여 선발한다.

② 일반전형은 년 2회 이상 전·후반기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10조(지원자격) 각 학위과정의 입학전형에 응시를 원하는 자는 학칙 제72조(지원자격)에 규정된 지원 자격을 구비한 자이어야 한다.

제11조(구비서류) 일반전형에 응시를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정의 기일 내에 입학전형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석사학위과정, 제작석사학위과정 <개정 2018.3.22.>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2. 학사학위 수여(예정)증명서 1통
3. 대학성적증명서 1통
4. 학업계획서(소정양식) 1통
5. 경력증명서(해당자) 1통
6. 재직증명서(해당자) 1통
7. 직업 군인(장기복무자)은 국방부 장관의 취학 승인서 1통
8. 전역예정자는 전역예정증명서 1통
9. 포트폴리오 <개정 2019.4.9., 2020.05.14.>

세부전공	내용
-영화제작 -영상특수효과 -애니메이션 / 디지털콘텐츠제작	1) 포트폴리오 양식 - 작품을 2편 제출할 경우, 각각 포트폴리오 양식을 작성해서 총 2부 제출해야 함 2) 지원자의 작품(최대 2개) -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 A4크기 프린트 10매 이상 - 파일로 제출할 경우, USB에 저장하여 제출(일반 PC에서 재생 가능한 형식) 3) 단편 시나리오 - 단편 시나리오 제출은 영화제작 전공 중 연출·프로듀싱·시나리오 분야 지원자에 한함
- 영화이론 - 디지털 / 과학사진 - 영상정책및기획 - 애니메이션 / 디지털콘텐츠	1) 학술적 비평문 - 작품 또는 작가에 대해 작성할 것 - 분량은 5~10장 내외로 할 것
- 예술공학 - Creative Masters	1) 포트폴리오 제출은 개인의 선택사항
유의 사항	제출한 포트폴리오는 1차 서류전형의 참고용으로만 사용되며, 제출한 포트폴리오는 반환되지 않음

② 박사학위과정

1. 입학원서(소정서식) 1통
2. 석사학위 수여(예정)증명서 1통
3.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통
4. 학업계획서(소정양식) 1통

5. 경력증명서(해당자) 1통
6. 재직증명서(해당자) 1통
7. 석사학위논문 및 최근 3년 이내 연구실적(실적물 목록 및 각 실적물 당 요약문 첨부)
8. 포트폴리오 <신설 2020.05.14.>

세부전공	내용
- 영화이론 - 디지털 / 과학사진 - 영상정책및기획 - 애니메이션 / 디지털콘텐츠	1) 학술적 비평문 - 작품 또는 작가에 대해 작성할 것 - 분량은 5~10장 내외로 할 것
- 예술공학 - Creative Masters	1) 포트폴리오 제출은 개인의 선택사항
유의 사항	제출한 포트폴리오는 1차 서류전형의 참고용으로만 사용되며, 제출한 포트폴리오는 반환되지 않음

9. 직업군인(장기복무자)은 국방부장관의 취학승인서 1통
10. 전역예정자는 전역예정증명서 1통
※ 외국대학 학위취득(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예정)증명서를 원본으로 제출하고,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한국어 번역문 또는 영문 번역문으로 공증받아 제출하여야 함.
- ③ 외국인 유학생
 1. 본인 여권 사본, 신분증 사본 1통
 2. 부모 여권사본, 신분증 사본 등의 국적증명서류 1통
 3. 본인과 부모 가족관계 증명서(중국인의 경우 호구부 사본) 1통
 4. 본인 및 부모 외국인 등록증 사본(한국내 거주자에 한함) 1통
 5. 한국어능력시험성적표(TOPIK) 또는 공인영어시험성적표(TOEIC, TOEFL) 원본(해당자에 한함) <삭제 2018.3.22.>
 6. 예금잔고증명서 <신설 2020.05.14.>

제12조(선발범위) 선발 인원은 운영위원회에서 대학원 정원 내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17.4.27.>

제13조(전형방법 및 평가기준)

- ①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으로 하되, 전공(분야) 구분 없이 공동평가에 의한다.
- ② 서류심사
 1. 학업계획서
 2. 대학 및 대학원 성적
 3. 그 밖의 각 계열 또는 전공에서 정하는 사항
- ③ 구술시험은 필답시험에 준하는 수준의 객관적 선별력과 심층적 판별력으로 실시하며, 다음 항목으로 평가한다.
 1. 전공에 대한 지식

2. 학문에 대한 열정과 진지성

3. 전공에 대한 적성

4. 그 밖의 각 계열 또는 전공에서 정하는 사항

④ 제2항과 제3항에 의한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의 각 호에 대한 구체적 평가 기준을 각 전공에서 내규를 통해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점 및 평가)

① 서류심사 : 100점 만점 <개정 2018.11.29.>

② 구술시험 : 100점 만점

③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에 대한 평가는 진행위원이 개별적·비공개적으로 하여 이를 평균적으로 산출한 바에 의한다.

제15조(합격사정 대상자 선정기준)

① 서류심사 :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취득한 자 <개정 2018.11.29.>

② 구술시험 :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취득한 자

제16조(합격사정) 운영위원회에서 입학시험의 결과를 사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 여부를 확정한다. <개정 2017.4.27.>

제17조(신입생등록) 입학이 허가된 자는 학칙 제22조(등록 및 납입금)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을 함으로써 입학이 확정된다.

2. 편입학 전형

제18조(목적) 이 시행내규는 학칙 제73조(편입학)의 편입학 전형에 따른 학생의 선발에 필요한 세부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지원자격 및 모집과정) ① 석·박사 공히 국내·외 대학원에서 동일(유사)전공의 학위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수료한 자 <개정 2018.3.22.>

② 석사·제작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구별하여 선발한다. 단, 석·박사 통합과정은 해외대학합작과정을 위한 과정으로 편입학 전형만으로 선발한다. <개정 2017.4.27.>

제20조(구비서류) 편입학 전형에 응시를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정의 기일 내에 입학전형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석사학위과정, 제작석사학위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개정 2017.4.27., 2018.3.22.>

1. 입학원서(소정 양식) 1통

2. 학사학위수여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3. 대학원 재학(수료)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4. 학업계획서(소정 양식) 1통

5. 유사학과 인정서(지원학과장 발급) 1통

※ 지원학과와 동일학과 출신이 아닌 자(소정 양식)

6. 경력증명서(해당자) 1통

7. 재직증명서(해당자) 1통

8. 직업 군인(장기복무자)은 국방부 장관의 취학 승인서 1통
9. 전역예정자는 전역예정증명서 1통
10. 포트폴리오 <개정 2019.4.9., 2020.05.14.>

세부전공	내용
-영화제작 -영상특수효과 -애니메이션 / 디지털콘텐츠제작	1) 포트폴리오 양식 - 작품을 2편 제출할 경우, 각각 포트폴리오 양식을 작성해서 총 2부 제출해야 함 2) 지원자의 작품(최대 2개) -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 A4크기 프린트 10매 이상 - 파일로 제출할 경우, USB에 저장하여 제출(일반 PC에서 재생 가능한 형식) 3) 단편 시나리오 - 단편 시나리오 제출은 영화제작 전공 중 연출·프로듀싱·시나리오 분야 지원자에 한함
- 영화이론 - 디지털 / 과학사진 - 영상정책및기획 - 애니메이션 / 디지털콘텐츠	1) 학술적 비평문 - 작품 또는 작가에 대해 작성할 것 - 분량은 5~10장 내외로 할 것
- 예술공학 - Creative Masters	1) 포트폴리오 제출은 개인의 선택사항
유의 사항	제출한 포트폴리오는 1차 서류전형의 참고용으로만 사용되며, 제출한 포트폴리오는 반환되지 않음

11. <삭제 2020.05.14.>

12. 각종 수상경력 관련자료(사본) - 해당자에 한함.

13. 작품 전시회 카탈로그 및 기타자료 - 해당자에 한함.

※ 외국대학 학위취득(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예정)증명서를 원본으로 제출하고,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한국어 번역문 또는 영문 번역문으로 공증받아 제출하여야 함.

② 박사학위과정

1. 입학원서(소정 양식) 1통
2. 대학 성적증명서 각 1통
3. 석사학위 수여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개정 2012.9.1.>
4. 박사학위 과정 재학(수료)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5. 학업계획서(소정 양식) 1통
6. 유사학과 인정서 (지원 전공주임교수 및 학과장 발급) 1통
- ※ 지원전공과 동일전공 출신이 아닌 자(소정 양식)
7. 경력증명서(해당자) 1통
8. 재직증명서(해당자) 1통

9. 석사학위논문 및 최근 3년 이내 연구실적 (실적물 목록 및 각 실적물 당 요약문 첨부)
 10. 포트폴리오 <신설 2020.05.14.>

세부전공	내용
- 영화이론 - 디지털 / 과학사진 - 영상정책및기획 - 애니메이션 / 디지털콘텐츠	1) 학술적 비평문 - 작품 또는 작가에 대해 작성할 것 - 분량은 5~10장 내외로 할 것
- 예술공학 - Creative Masters	1) 포트폴리오 제출은 개인의 선택사항
유의 사항	제출한 포트폴리오는 1차 서류전형의 참고용으로만 사용되며, 제출한 포트폴리오는 반환되지 않음

11. 직업 군인(장기복무자)은 국방부 장관의 취학 승인서 1통
 12. 전역예정자는 전역예정증명서 1통
 ※ 외국대학 학위취득(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예정)증명서를 원본으로 제출하고,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한국어 번역문 또는 영문 번역문으로 공증받아 제출하여야 함.
- ③ 외국인 유학생
1. 본인 여권 사본, 신분증 사본 1통
 2. 부모 여권사본, 신분증 사본 등의 국적증명서류 1통
 3. 본임과 부모 가족관계 증명서(중국인의 경우 호구부 사본) 1통
 4. 본인 및 부모 외국인 등록증 사본(한국내 거주자에 한함) 1통
 5. 한국어능력시험성적표(TOPIK) 또는 공인영어시험성적표(TOEIC, TOEFL) 원본(해당자에 한함) 1통 <삭제 2018.3.22.>
 6. 예금잔고증명서 <신설 2020.05.14.>

제21조(합격사정) 운영위원회에서 입학시험의 결과를 사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 여부를 확정한다. <개정 2017.4.27.>

제22조(편입생 등록 및 정원) 입학이 허가된 자는 학칙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함으로써 입학이 확정되며, 선발인원은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8.11.29.>

제23조(전형방법 및 평가기준)

- ① 서류심사
1. 대학 및 대학원 성적
 2. 학업계획서
 3. 그 밖의 각 전공에서 정하는 사항
- ② 구술시험은 필답시험에 준 하는 수준의 객관적 선별력과 심층적 판별력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다음의 항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전공에 대한 지식

2. 학문에 대한 열정과 진지성
3. 전공에 대한 적성
4. 그 밖의 각 전공에서 정하는 사항

제24조(삭제) (2008.3.1)

제25조(전형시기) 편입학 전형은 년1회 이상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시기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7.4.27.>

제26조(배점 및 평가)

- ① 서류심사 : 100점 만점 <개정 2018.11.29.>
- ② 구술시험 : 100점 만점
- ③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에 대한 평가는 심사위원이 개별적·비공개적으로 하여 이를 평균적으로 산출한 바에 의한다.

제27조(합격사정 대상자 선정 기준)

- ① 서류심사 :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취득한 자 <개정 2018.11.29.>
- ② 구술시험 :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취득한 자

3. 학석사 연계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

제28조(전형시기 및 자격) ① 학석사 연계과정의 전형시기 및 자격은 본 내규 제9장에 의한다. <개정 2017.4.27.>

② 석·박사 통합과정의 전형 시기 및 자격은 본 내규 제10장에 의한다. <신설 2017.4.27.>

제2절 연구생

제29조(연구생) ① 학사 또는 석사학위소지자로서 연구생으로 입학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각 과정의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② 연구생으로서 교과학점 18학점을 이수한 자에게는 수료 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③ (BK 박사과정 수료연구생) 박사과정을 수료한 전일제로 재학 중인 4년 이하의 대학원생을 말하며, BK 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된다.

제3절 외국인 학생

제30조(목적) 본 내규는 학칙 제72조의 자격을 갖춘 외국인 학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1조(외국인 학생의 범위) 본 내규에서 규정하는 외국인 학생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의거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2.>

- ①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②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 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 국민 및 외국인

제32조(정원) 외국인 학생에 대해서는 학칙 제18조에 의하여 정원 외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33조(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본 대학원 각 학위 과정에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은 본 대학원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시행 내규에 규정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34조(학칙 및 제반 내규의 적용) 외국인 학생에 대한 본 내규 이외의 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교 학칙 및 제반 내규를 적용한다. <개정 2018.3.22.>

제4절 등록·휴학·복학·자퇴·제적·재입학

제35조(등록) 등록은 정규등록과 연구등록으로 구분한다.

① 각 과정의 재학생이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정규등록을 해야 하며, 정해진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한 후라도 석사·제작석사·박사학위과정은 4회 이상, 석·박사 통합과정은 8회 이상 정규등록을 필하여야 학위 논문 제출 자격을 얻는다. <개정 2018.11.29.>

② 석사·제작석사·박사학위과정은 4학기 이상, 석·박사 통합과정은 8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수료에 필요한 학점이 부족한 자는 수강 신청 학점이 3학점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학점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1.29.>

③ 정규등록 이후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학위청구논문 제출 전 2회 이상 연구등록을 필해야 하며, 본인 의사에 따라 매학기 연구등록을 할 수 있다. 1차 연구등록은 수료 후 첫학기, 2차 연구등록은 학위청구논문 제출 시로 하고, 미납된 연구등록금이 있을 경우 2차 연구등록금 기준으로 소급하여 미납된 연구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연구등록 학기는 각 과정별 재학연한 이내로 하고, 미납된 연구등록금이 있을 경우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12.9.1.>

④ 연구등록 시행은 200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8년 이전 입학하여 석사·제작석사·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2007학년도 3월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8.3.22.>

⑤ 정규등록 이후 석사·제작석사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매학기 연구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3.22.>

제36조(등록금) ① 학생은 매 학기 초 정규등록 시는 수업료를, 연구등록 시는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납입한 금액은 학칙 제22조(등록 및 납입금)를 적용한다.

② 수업료는 학기별로 납부한다. 다만, 정규등록 이후의 연구등록금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입학금은 입학 및 재입학 시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2.>

④ 학기 개시 전 및 휴학 기간 내에 휴학하는 자는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개정 2018.3.22.>

제36조의 2(등록금의 반환) 등록금 반환에 관하여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및 학사 운영

규정 I 제10조(등록금의 반환)와 제11조(등록금 반환 기준)를 적용한다. <개정 2018.3.22.>

제37조(휴학) ① 휴학은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속 1개월 이상 수학이 불가능한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③ 휴학기간은 재학 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학사 운영 규정 I 제59조를 준용하여 통산 4학기 이내 임신, 출산 및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한 육아휴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3.22.>

제38조(복학) ① 휴학한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 수행으로 휴학한 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복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학기 개강 4주전부터 개강 후 4주 이내로 한다.

제39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학칙 제25조에 의거 자퇴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0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①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②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③ 재학 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④ 이중 학적 보유자

⑤ 학사 경고를 연속 2회 또는 누적하여 3회 받은 자. 단, 대학원장은 학칙 제57조를 준용하여 매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1.75미만인 자에 대하여 학사경고 처분이 가능하다. <신설 2018.11.29.>

⑥ 기타 제적 사유에 해당하는 제 규정 위반자

제41조(재입학) ① 제적된 자 중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재입학의 허가는 다른 법령에 의하지 않는 한 제적일로부터 1년 경과해야 한다, 다만 제40조 1호 내지 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등록금 외에 재입학금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2016학년도 2학기까지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한 자 중 복학기간 만료로 제적되어 1년 이내(군 입대기간 제외)에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등록금을 대체 인정하며 재입학금만 부과한다. <개정 2018.3.22.>

④ <삭제 2012.9.1.>

제41조의2(특례재입학)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제45조에서 규정한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에 대해서 총장의 승인을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특례재입학의 시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2.9.1.>

제42조(세부전공변경) 세부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2차 학기 초 동일전공 내 세부전공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장 수업·장학·논문 제출자격시험

제1절 수업

제43조(수업) 수업은 주간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4조(수업연한) 석사·제작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은 각 2년, 석·박사통합 과정의 수업 연한은 4년으로 한다. (2007학년도까지는 제작석사학위과정 3년, 2008학년도부터는 석사·제작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2년) <개정 2018.3.22., 2021.05.27.>

제45조(재학연한) 석사·제작석사학위과정은 5년, 박사학위과정은 8년,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의 재학연한은 9년 이내로 하며, 휴학기간 및 체적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외국인은 재학연한을 두지 않는다. (2007학년도까지는 제작석사학위과정 8년, 2008학년도부터는 석사·제작석사학위과정 5년, 박사학위과정 8년) <개정 2018.3.22., 2021.05.27.>

1. 교과과정 운영

제46조(목적) 본 내규는 대학원 교과과정의 편성, 교과목의 개설 및 수강에 관련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7조(교과목) ① 기초교차과목, 전공과목과 자유선택과목으로 나눈다.

② 기초교차과목은 타 전공 학생을 위해 개설되는 과목이며, 학생의 소속 전공에 구분 없이 수강할 수 있는 교과목을 말한다.

③ 전공과목은 학생이 소속된 전공의 교과목을 말하며, 이를 다시 석사·박사학위과정 공통과목, 제작석사학위과정 과목 등으로 나눈다. <개정 2012.9.1.>

1. <삭제 2012.9.1.>

2. 석사·박사학위과정 공통과목 (이하 “석박사공통과목” 이라 한다) : 전공내규에 의해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각 과정의 학생이 연구구분야에 관계없이 공통으로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을 말한다. 석사·박사학위과정 공통과목에는 인공지능 첨단세미나, 대학원프로젝트, 기초교차과목, 융합과목, 기초핵심과목, 석·박사과정 전공과목이 포함된다. 단, 본교출신 박사과정생의 경우 석·박사 공통과목으로 개설된 동일과목의 수업을 석사과정 시 수강했으면 박사과정 시 수강할 수 없다. <개정 2012.9.1., 2021.05.27.>

3. 제작석사 과목 : 전공내규에 의해 제작석사를 위해 개설하는 과목을 말한다.

4. <삭제 2012.9.1.>

④ 자유선택과목 : 타 전공 및 일반, 전문, 특수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을 말한다.

제48조(학점수) 교과목은 한 교과목 당 3학점 단위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49조(교과과정) ① 전공 개설과목은 가급적 전공의 학문적 영역을 포괄하는 중심과목을 위주로 전공 단위로 편성한다.

② 각 전공의 매 학기 개설과목은 전공공통과목을 65%이상이 되도록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0조(교과목의 설정) 전공과목은 매 2년마다 각 전공의 교수회의를 거쳐 전공주임교수 및 학과장이 편성하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문 및 과학기술 발전에 신속히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전공과목의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학기 시작 전에 전공교수회의를 거쳐 전공과목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과목 편성에 대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4.27., 2018.11.29.>

제51조(교과과정 변경) 설정된 교과과정은 결정된 후 2년 이내는 변경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4.27.>

제52조(전공연구) ① 전공연구 과목은 2학점으로 전공분야의 심층연구와 논문지도를 목적으로 하며 지도교수는 연구과제 수행, 세미나, 전공분야의 심층적 보충강의 및 실험·실기 등을 통하여 이를 행한다. (2009학년도 전반기 입학자까지 적용, 2009학년도 후반기 입학자부터 폐지)

② 전공연구 과목은 전공내규로 분류된 전공분야에 따라 논문지도 교수의 책임 하에 운영한다. 그러나 논문지도 및 연구수행의 효율 제고 상 필요한 경우에는 유사한 전공분야의 교수 2인 또는 타 대학교 교수와 연구기관의 조교수급이상 연구원과의 공동 운영도 가능하며 지도교수 상호간의 합의에 따라 학제 간 연구의 형태로 타 전공 교수와 협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2009학년도 전반기 입학자까지 적용, 2009학년도 후반기 입학자부터 폐지)

③ <삭제 2021.05.27.>

제52조의2(인공지능 첨단세미나) ① 인공지능 첨단세미나는 석사학위 과정 재학생의 1학점 필수과목으로 영상예술학 및 영상공학의 전체를 조망하는 과목을 말한다.

② 인공지능 첨단세미나는 3개의 강의(인공지능 리터러시, 인공지능 인문학개론, 인공지능 페르소나 개념설계)로 구성하여 매학기 1개 강의를 개설하며, 재학생은 졸업 전까지 1개 강의를 이수하여야 한다. 단, Creative Masters전공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인공지능 첨단세미나는 대학원의 전임교수, 겸임교수, 외부 초빙강사, 외부 초대연사 등 다양한 강연자를 통해 진행한다.

④ 인공지능 첨단세미나의 강연자와 강의 내용은 매학기 시작 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본조 신설 2021.05.27.]

제53조(학기당 교과목 개설상한) 각 전공이 학기당 개설할 수 있는 교과목은 90학점 이내에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4조(삭제) (2008.3.1)

제55조(교과학점 담당상한) 교·강사 1인의 담당과목은 전공연구 과목을 제외하고 연간 18학점을 초과하여 담당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이 상한을 초과하여야하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개정 2021.05.27.>

제56조(수료학점) ① 석사·제작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은 30학점 이상, 석·박사 통합과정은 6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2007학년도까지는 제작석사학위과정 45학점, 2008학년도부터는 석사·제작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30학점) <개정 2017.4.27., 2018.3.22.>

② 석사·제작석사학위과정은 인공지능 첨단세미나 1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개정 2017.4.27., 2018.3.22., 2021.05.27.>

③ <삭제 2021.05.27.>

④ 영상예술학전공의 제작석사과정과 영상공학전공의 석사과정은 재학기간 내 대학원프로젝트과목 1개 이상을 필히 이수해야 한다. 단, 이 항은 2000년 3월 입학생부터 적용, 이 교과목은 프로젝트 단어가 있는 교과목을 말한다.

제57조(학기당 이수학점) ① 교과학점은 매학기 9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다만, 석사·제작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전 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4.30 이상인 자는 1회에 한하여 3학점까지 초과하여 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21.05.27.>

② <삭제 2021.05.27.>

③ 총 이수학점 중 소속전공 과목 이수학점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2.9.1.>

제58조(인정학점) 본 대학원에서 제적 또는 퇴학한 자가 재입학 하였을 경우에는 그 이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한다.

제59조(편입학 학점인정) ① 석사·제작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에 편입학한 자는 전적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본 대학원의 교과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과목에 한하여 12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단, 해외대학합작과정을 통하여 본 대학원으로 편입학한 경우 18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17.4.27., 2018.3.22.>

② 박사학위과정에 편입학 한 자는 전적 대학원의 교과목 중 대학원의 교과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과목에 한하여 15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제60조(과정별 학점인정 범위) ① 석사학위과정과 동일 혹은 유사한 박사학위과정의 전공에 입학한 자는 석사학위과정에서 총 이수한 교과학점에 관계없이 30학점 이수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본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한 경우, 석사과정에서 3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는 최대 6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은 단축되지 않는다. <개정 2012.9.1.>

② 석사학위과정과 제작석사학위과정간의 학점교류는 9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제61조(과정 간 학점인정) ① 학부 3, 4학년 재학생으로서 본 대학원의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전공주임교수 및 학과장이 지정하는 전공 필수과목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② 1항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대학원 입학 후 이수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제62조(학점교환제) ① 본 대학원 재학생으로서 본교 일반, 전문, 특수대학원의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 당 1과목을 이수할 수 있으며, 석사·제작석사학위과정은 총 9학점, 박사학위과정은 총 12학점에 한하여 해당 전공주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과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8.3.22. 2021.05.27.>

② 본 대학원과 협정관계에 있는 국내·외 타 대학원의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전공주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과 양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학기당 1과목, 총 2과목까지 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12.9.1.>

③ 학칙 제80조에 따라 국외 대학원과의 공동 및 복수 석, 박사 학위수여로 협정관계에 있는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기당 9학점까지 대학원장의 허락을 얻어 인정할 수 있다.

제63조(교과이전) 본 대학원 입학 전에 국내, 외의 타 대학교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석·박사 학위과정은 6학점 범위 내에서 취득학점을 이전할 수 있다.

제64조(신청기간) 교과 이전의 신청은 당해 학생의 재학기간 중 신청한 것에 한한다.

제65조(이전의 인정절차) ① 교과이전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교과이전 신청서와 전적대학원의 성적증명서를 첨부, 전공주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9.>

② 제출된 교과이전 신청은 대학원장의 최종 인정에 따라 이를 학적부의 성적에 반영한다.

제66조(수료인정 및 시기) ① 석사·제작석사학위과정 재학생으로서 4회 이상 등록을 필하고, 교과학점 30학점 이상(대학원 프로젝트, 기초교차 포함)과 아래 표의 기준대로 학점을 이수한 경우 석사·제작석사학위과정 수료를 인정한다. <개정 2021.05.27.>

적용 시기(입학기준)	수료인정 필수 학점
2000년 전반기 ~ 2009년 전반기	전공연구 2학점 첨단영상세미나 1학점
2009년 후반기 ~ 2020년 후반기	첨단영상세미나 1학점
2021년 전반기 ~	인공지능 첨단세미나 1학점

② 박사학위과정 재학생으로서 4회 이상 등록을 필하고 교과학점 3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게 박사학위 과정 수료를 인정한다. <개정 2021.05.27.>

③ 석사·제작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박사 통합과정의 수료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개정 2017.4.27.>

제67조(수강과목 제한) ①. 동일 교·강사가 담당하는 교과목은 4과목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다. 다만,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석사·제작석사·박사과정 학생은 타 전공과목(기초교차과목은 제외)은 1학기에 1과목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고, 4차 학기 동안 9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다. 다만,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11.29.>

③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은 타 전공과목을(기초교차과목은 제외) 1학기에 1과목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고, 8차 학기 동안 18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다. 단,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8.11.29.>

제68조(수강생수) 수강생이 4명 이상인 교과목에 한하여 설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공의 특수성 등의 사유로 총장의 승인을 받으면 예외로 한다. <개정 2019.4.9., 2021.05.27.>

제69조(보충수강) 논문지도 교수는 박사학위 과정의 학생이 논문 제출에 필요한 수료학점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논문지도상 특정과목의 보충수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6학점 범위 내에서 5차, 6차 학기에 그 보충 과목의 이수를 지시할 수 있다.

제70조(학업성적의 등급 및 평가) 본 대학원 학업 성적의 등급 및 평가는 다음과 같다. 학업 성적은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유효하다.

등 급	점 수	평 점	등 급	점 수	평 점
A+	95 -100	4.5	C+	75 - 79	2.5
A	90 - 94	4.0	C	70 - 74	2.0
B+	85 - 89	3.5	F	0 - 69	-
B	80 - 84	3.0			

2. 연계세부전공

제71조(목적) 본 내규는 영상예술학전공과 영상공학전공이 연계한 영상학과로서 사회의 요구에 맞는 분명한 전공명과 교육목표 및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시대적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고 아울러 학문의 본질적 요소를 충족시키는 주제중심의 통합교과전공을 개발, 운영하는데 있다. 또한 사회문화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전공을 학생들에게 제시하여 보다 넓은 전공 선택의 기회부여 및 이로 인한 포괄적인 안목과 실천적 의지를 배양하는 실용전문인을 양성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72조(개설연계세부전공)

연계세부전공명	주관 전공명	영상예술학전공 최소이수학점	영상공학전공 최소이수학점
컴퓨터특수효과영상	영상예술학전공	9	9
엔지니어링애니메이션	영상공학전공	9	9
멀티미디어디자인	영상공학전공	9	9
개인설계전공	첨단영상대학원	연계전공 위원회에서 결정	

제73조(신청자격 및 이수제한) 영상예술학전공 또는 영상공학전공에서 1차 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재학생으로, 석사 및 제작석사 과정의 학생에 한하여 재학 중 1개의 연계세부전공만을 선택할 수 있다. <개정 2018.3.22.>

제74조(신청 및 선정절차) ① 연계세부전공은 다음 2항에 의거하여 신청한다.

② 신청서 작성 → 교학지원팀에 신청서 접수 → 주관전공에서 심사 후 이수허가자 선정 → 대학원장 결재 → 해당학생에게 통보 → 내규에 의한 수강신청 및 논문/작품 완성 → 운영위원회 심사 → 연계세부전공 졸업 <개정 2017.4.27., 2018.11.29.>

제75조(연계전공의 변경 또는 포기) ① 연계세부전공의 이수를 중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학기말까지 “연계세부전공 포기원”을 작성하여 교학지원팀에 제출하고 연계세부전공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의 결재로 원래의 전공으로 돌아갈 수 있다. <개정 2018.11.29.>

② 이 경우 학점이수 및 졸업은 각 전공의 내규에 따른다.

제76조(이수학점) 연계세부전공의 이수학점은 각 연계세부전공별 이수 기준표를 참조하고 이는 대학원장이 주관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7.4.27., 2018.11.29.>

제77조(컴퓨터특수효과영상연계 세부전공)

① <삭제 2018.3.22.>

② <삭제 2018.3.22.>

③ 학점이수 기준표 <개정 2018.3.22.>

영상공학전공 개설과목	영상예술학전공 개설과목
컴퓨터그래픽스와 디지털영상 디지털영상처리I,II 영화와특수효과기술 컴퓨터그래픽스실습 영상편집의이해 영상정보처리실습 멀티미디어응용 멀티미디어프로그래밍 컴퓨터게임제작론	특수효과론 디지털매트I,II <삭제 2018.3.22.> 디지털합성론 영상특수효과연구 영화영상연구 영상특수효과 및 애니메이션의 3D CG분석 촬영연구 I 영상제작론
디지털애니메이션제작프로젝트, 컴퓨터게임제작프로젝트, 특수효과제작프로젝트, 실시간인터랙티브 영상제작프로젝트	

④ 졸업논문 및 작품기준 등 연계세부전공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3.22.>

제78조(엔지니어링애니메이션연계 세부전공)

① <삭제 2018.3.22.>

② <삭제 2018.3.22.>

③ 학점이수 기준표 <개정 2018.3.22.>

영상공학전공 개설과목	영상예술학전공 개설과목
컴퓨터그래픽스와 디지털영상 컴퓨터그래픽스실습 가상환경실습 컴퓨터그래픽스의이해 이미지합성 시각화기법 영상정보처리실습 멀티미디어응용 컴퓨터그래픽스이해 컴퓨터게임제작론 3D컴퓨터애니메이션기술	영상제작론 영화영상연구 촬영연구 I 편집연구 프리덕션 디자인 디지털영상편집및합성 I 특수효과론 타이밍분석 I 디지털애니메이션워크샷 I,II 단편애니메이션기획II 3D애니메이션촬영및조명 I
디지털애니메이션제작프로젝트, 컴퓨터게임제작프로젝트, 특수효과제작프로젝트, 실시간인터랙티브영상제작프로젝트	

④ 졸업논문 및 작품기준 등 연계세부전공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3.22.>

제79조(멀티미디어디자인연계세부전공)

① <삭제 2018.3.22.>

② <삭제 2018.3.22.>

③ 학점이수 기준표 <개정 2018.3.22.>

영상공학전공 개설과목	영상예술학전공 개설과목
멀티미디어:바그너에서가상현실까지 <삭제 2018.3.22.> 멀티미디어응용 실시간디지털아트제작 I 컴퓨터게임제작론 3D컴퓨터애니메이션기술 가상환경개론 <삭제 2018.3.22.> 고급컴퓨터그래픽스 디지털미학 <삭제 2018.3.22.> 증강현실특강	<삭제 2018.3.22.> <삭제 2018.3.22.> <삭제 2018.3.22.> 음향연구 멀티미디어연구 애니메이션연출 영상이론 I 실험영화와비디오아트 매체미학 디지털융합매체연구 디지털이미징세미나 I 타이밍분석 I,II 디지털영상편집및합성 I,II
디지털애니메이션제작프로젝트, 컴퓨터게임제작프로젝트, 특수효과제작프로젝트, 실시간인터랙티브영상제작프로젝트	

④ 졸업논문 및 작품기준 등 연계세부전공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3.22.>

제80조(개인설계전공) ① 필요성 : 첨단영상대학원에서 제공하는 4가지 연계세부전공 외에 새로운 전공을 가능케 하여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 아울러 학문의 본질적 요소를 충족시키는 주제 중심의 전공을 개발하는데 있다.

② 전공의 목표 : 예술과 공학을 접목한 다양한 전공의 교과과정을 학생들에게 설계할 수 있게 하여 보다 넓은 전공 선택의 기회부여 및 이로 인한 실용전문인을 양성함에 그 목적이 있다.

③ 학점이수 및 졸업논문/작품기준 : 개인설계전공을 신청한 학생의 전공신청서를 기준으로 연계전공 주임교수가 포함된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17.4.27.>

제2절 장학

제81조(목적) 본 내규는 대학원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82조(지급대상) 장학금 지급 대상은 첨단영상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한다. (단, Creative Masters 전공은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20.05.14.>

제83조(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CAU우수인재장학금 : CAU리더 또는 과학리더 장학생으로서 석사과정 입학자에게 다음과 같이 CAU 우수인재 장학금을 지급함

1. 선발대상 : 중앙대학교에 CAU리더 또는 과학리더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학부 4년간 CAU리더 또는 과학리더 장학생으로서 석사과정 입학자
2. 대학원 재학 중 4.0이상 유지 시 4차학기까지 계속 지급
3. 장학금액 : 등록금(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면제 및 매월 연구지원금(300,000원) 지급
4. 기타사항 : 전일제 학생으로서 졸업 전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등재(후보)학술지(공학 계열 JCR) 이상 학술지에 논문실적 1편 이상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시 졸업불가 <개정 2018.3.22.>

② 성적우수장학금

1. 공학계열

가. 대상 : 학업성적 및 연구역량이 우수한 전일제 신입생으로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자 (본교 졸업생 우대)

계열	석사	박사	
	학부성적	학부성적	석사성적
공학(예술공학 포함)	3.0이상	3.0이상	3.5이상

나. 대학원 재학 중 3.5이상 유지 시 4차학기까지 계속 지급

다. 장학금액 : 수업료 전액(입학금 제외)

라. 장학인원 : 연간 00명(심사 후 선발)

마. 졸업조건 <개정 2017.4.27.>

1) 석사 : 졸업 전 단독 또는 지도교수와 공저로 논문 1편 발표(게재확정 포함), 미이행 시 졸업불가

2) 박사 : 졸업 전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논문 1편 발표(게재확정 포함), 미이행 시 졸업불가, 졸업조건의 논문발표와 별도

계열	석사	박사
공학	JCR 이상 학술지 주저 1편 또는 공저 1편 (단, 공저의 경우 상위 70% 이내)	JCR 이상 학술지 주저 1편
예술공학		

바. 선발방법 : 장학금 신청접수를 받아서 연간 00명 이내에서 선발할 예정임

사. 신청서류 :

- 1) 성적우수장학금 신청서
- 2) 지도교수 추천서
- 3) 학부 및 석사과정 성적증명서
- 4) 4대보험 가입확인서(<http://www.4insure.or.kr/>)

2. 예술계열

가. 대상 : 학업성적 및 연구(실기) 활동이 우수한 신입생 및 재학생

구분	석사/제작석사	박사
	학부성적	석사성적
신입생	3.5이상	3.5이상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3.5이상	

나. 장학금액 :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8.3.22.>

다. 장학인원 : 연간 00명(심사후 선발)

라. 졸업조건

1) <삭제 2018.3.22.>

2) <삭제 2018.3.22.>

3) 박사 : 졸업 전 등재(후보)학술지 이상 논문 2편 발표(게재확정 포함), 미이행시 졸업불가 <개정 2018.3.22.>

마. 선발방법 : 장학금 신청접수를 받아서 연간 00명 이내에서 선발할 예정임

바. 신청서류 :

1) 성적우수장학금 신청서

2) 지도교수 추천서

3) 연구활동 보고서(석사/제작석사)

4) 학부 및 석사과정 성적증명서

5) 4대보험 가입확인서(<http://www.4insure.or.kr/>)

사. 기타사항 : 이외의 장학사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함 <개정 2018.3.22.>

③ 우수인재 장학금 : 우수인재를 통한 연구능력 강화 및 연구보조인력 활용을 위하여, 성적우수 장학금 지급 후 잔여금액을 우수인재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1. 선발대상 및 방법 : 직전학기 성적평점 3.5 이상으로, 연구능력이 우수한 재학생 중 전공주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선발한다.

2. 장학금액 : 성적우수 장학금 잔여금액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8.3.22.>

3. 선발인원 : 성적우수 장학금 잔여금액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8.3.22.>

4. 지급방법 : 고지감면을 원칙으로 하나, 기등록자의 경우는 증서환불할 수 있다.

④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 외국인 입학전형으로 입학하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에게 다음과 같이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을 지급한다.

1.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금

가. 대상 :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입학한 자

나. 장학금액 :

1) 정부지원 : 수업료 일부 및 생활비 등 지원

2) 본교지원 : 입학금 전액 및 수업료 일부 지원

2. 외국인유학생장학금 <개정 2018.11.29.>

구분	예술계열	공학계열
1차 학기	-한국어능력 5급 이상 또는 TOEFL 77(IBT)/TOEIC 780 이상: 수업료 70% -기타: 수업료의 50% (위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인유학생 전체)	-수업료 전액 (단, 입학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 시 70점 미만일 경우 수업료의 50%)
2차 학기	-3,4차학기 기준 적용	- “상동” (단, 평점 3.0 미만시 제외)
3,4차 학기	-장학금액: 직전학기 성적평점 3.0 이상: 수업료의 50% 직전학기 성적평점 3.0 미만: 지급 제외 -이수학점: 6학점 이상	-장학금액: 직전학기 성적평점 4.3 이상: 수업료의 70% 직전학기 성적평점 4.3 미만~3.0 이상: 수업료의 50% 직전학기 성적평점 3.0 미만: 지급 제외
5~8차 학기 (석·박사 통합과정)	-장학금액: 직전학기 성적평점 3.0 이상: 수업료의 50% 직전학기 성적평점 3.0 미만: 지급 제외 -이수학점: 6학점 이상	

⑤ 직계 장학금

1. 대상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2차학기 부터는 직전학기 성적이 3.0/4.5 이상인 자에게 지급한다.

가. 본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원(정년트랙 및 별정제 교원), 직원(일반사무직, 기능직), 법인 임직원의 본인 및 직계자녀 <개정 2021.05.27.>

나. 본 대학교 또는 법인에 재직 중 정년 또는 명예퇴직한 전임교원(정년트랙 및 별정제 교원), 직원(일반사무직, 기능직), 법인 임직원의 직계자녀 <개정 2021.05.27.>

다. 본 대학교 또는 법인에 15년이상 근무하고 순직, 공상으로 퇴직한 전임교원(정년트랙 및 별정제 교원), 직원(일반사무직, 기능직), 법인 임직원의 직계자녀 <개정 2021.05.27.>

2. 지급액과 지급기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지급액: 수업료(입학금 제외) <개정 2019.4.9., 2021.05.27.>

대상	본인	직계자녀
지급액	수업료 전액	수업료 전액

나. 지급기간 : 수업연한까지

⑥ 부속기관장학금 :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산하기관(중앙대학교 제외)에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 본인, 배우자 및 직계자녀 중 1인에 한하여 직전학기 성적이 3.0 이상인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7.4.27.>

1. 본인 : 수업료 50%(입학금 제외)

2. 배우자 및 직계자녀 : 수업료 25%(입학금 제외)

3. 지급기간 : 수업연한까지(재직 시에 한함)

4. 제출서류

가. 재직증명서

나. 가족관계증명서

⑦ 특성화 장학금 <개정 2018.3.22.>

1. 본 대학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대학원장이 정한다.

2. 본 장학금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세칙 제33조에 따라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4조(선발기준 및 지급기준) 장학금 수혜대상자 선발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의 재가를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17.4.27.>

제85조(지급방법) 교내 각종 장학금은 매학기 등록 전 고지감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등록을 필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무통장 입금으로 환불한다.

제86조(지급시기) 지급시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 학기 초로 한다.

제87조(지급중지 및 회수) 장학생으로 선정되거나 장학금 지급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그 지급을 중지하며 이미 지급된 장학금도 회수한다.

- ① 학칙에 위반되는 행동을 한 사실이 판명될 때
- ② 장학금의 신청절차 및 신청사유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변경사유가 발생될 때
- ③ 징계처분을 받거나 받은 사실이 있을 때

제88조(기타) 본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18.3.22.>

제3절 학위논문 제출자격 시험

1.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제89조(목적) 본 내규는 학칙 제84조에 규정된 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0조(시기)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은 연 2회, 매 학기 초 1개월 내에 실시한다. 단, 천재지변 또는 사회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실시여부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5.27.>

가. 석사학위, 제작석사학위

제91조(응시자격) 종합시험은 3회 이상 등록을 필하고 18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92조(응시절차)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를 소정의 기일 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3조(종합시험의 목적) 종합시험은 학생의 각 전공분야와 연구방법에 대한 기초지식이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제94조(종합시험 과목) 종합시험과목은 해당전공 1과목으로 하며 응시과목의 결정은 전공내규로 따로 정한다.

제95조(시험위원) 종합시험 위원은 해당전공주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96조(합격기준) 종합 시험은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97조(시험방법 및 소요시간) 종합시험은 공히 필답시험으로 하며 시험시간은 90분으로 한다.

나. 박사학위

제98조(응시자격) 외국어시험은 2회 이상 등록을 필하고 9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이어야 하며, 종합시험은 3회 이상 등록을 필하고 18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

제99조(외국어시험의 목적) 외국어시험은 박사학위과정 중의 학생이 전공분야의 학문연구에 필요한 외국어독해능력이 적합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가를 판정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제100조(합격기준) 외국어시험 과목은 영어로 하며, 외국인학생은 한국어시험으로 대체한다. 단 학과와 응시자의 연구부분의 성격상 기타의 외국어를 선택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와 해당 전공주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1조(종합시험의 목적) 종합시험은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자가 학위논문을 제출할 만한 해당 분야의 전문적 연구방법에 대한 지식이나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가를 판정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제102조(종합시험 과목) 종합시험 과목은 해당전공 1과목으로 하며 응시과목의 결정은 전공 내규로 따로 정한다.

제103조(합격기준) 외국어 및 종합시험의 성적은 100점 만점에 외국어는 60점 이상, 종합시험은 과목별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영어시험의 경우 TOEIC 780점, TOEFL 530점 (CBT 233점, IBT 91점), TEPS 644점, IELTS 6급 이상(단, 어학시험 대체인정서 제출일 현재 유효한 성적에 한함) 취득하여 외국어시험 대체인정서를 제출하면 합격한 것으로 한다. 또한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을 대체하려면 한국어능력(TOPIK) 4급 이상 자격증소지자 또는 세계한국말인증시험(KLPT) 350점 이상 취득자에 한하여, 한국어능력시험대체인정서를 제출하면 합격한 것으로 한다. 단, 2회 이상 한국어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지도교수가 일상회화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된다. <개정 2018.11.29.>

제104조(시험방법 및 시간) 외국어 및 종합시험은 공히 필답시험으로 하며 시험시간은 외국어시험 60분, 종합시험 90분으로 한다.

제4절 학생 자치활동 및 지도

제105조(학생의 지도) 본 대학교 학칙 제4장 제4절을 준수함은 물론 대학원장의 감독을 받아 학업에 전념하여야 한다.

제106조(징계) 대학원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본 대학원 운영위원회 심의 후 일반대학원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징계 할 수 있다. 징계 대상에 관한 기준은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67조의 3을 준용한다. <개정 2017.4.27., 2018.3.22., 2018.11.29.>

제4장 학위 수여 규정

제1절 총칙

제107조(목적) 본 규정은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석사, 제작석사, 박사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27.>

제108조(학위수여) 각 학위는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각 학위별 각종 논문제출자격시험을 통과한 후 학위논문심사 및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마친 자에게 총장이 수여한다. <개정 2017.4.27.>

제109조(학위종별) 본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는 학칙 제86조 제1항과 같다.

1. 석사학위, 제작석사학위

제110조(학위수여 요건) 석사학위, 제작석사학위는 본 대학원 석사학위, 제작석사학위 과정을 수료하고 본 내규 제93조 및 제120조의 절차를 거친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7.4.27.>

제111조(논문(작품)제출 자격) 석사학위, 제작석사학위청구논문(또는 작품)(이하 ‘석사학위, 제작석사학위논문(작품)’이라 칭한다)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본 대학원 석사학위, 제작석사학위과정 수료자 또는 수료 예정자
2. 전공내규에 따라 예비심사에 합격한 자
3. 석사학위, 제작석사학위논문(작품 및 제작보고서 또는 제작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4. 논문지도교수로부터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개정 2012.9.1.>
5. <삭제 2021.05.27.>
6. <삭제 2018.3.22.>
7. 논문(작품 및 제작보고서 또는 제작논문)제출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논문(작품 및 제작보고서 또는 제작논문)제출시한 최종학기에 지도교수의 해외연수, 신분변동, 공공성을 띤 학생의 해외연수, 해외유학, 해외근무 또는 6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장 1년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대학원 수료 후 군입대 및 전문연구요원 복무로 논문제출 기한이 초과하였을 경우에도 군복무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제112조(논문제출 절차) 석사학위, 제작석사학위논문(작품 및 제작보고서 또는 제작논문)제출 자격을 갖춘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전기는 3월초, 후기는 9월초까지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학위논문(작품 및 제작보고서 또는 제작논문)제출승인서(소정양식) 1통
- ② 전공주임교수 및 학과장이 인정한 예비심사 합격보고서 1통

③ (제작)석사학위청구논문(작품 및 제작보고서 또는 제작논문) (예비심사용 : 소속전공에 제출) 3통

④ <삭제 2017.4.27.>

제113조(논문작성 용어)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어로 작성할 수도 있다. 다만, 논문은 국문과 영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논문의 분량과 제책) 별도의 제책 기준에 따른다.

2. 박사학위

제115조(학위수여 요건) 박사학위는 본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석·박사 통합과정을 수료하고, 본 내규 제99조, 제101조 및 제129조의 절차를 마친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7.4.27.>

제116조(논문제출자격) 박사학위청구논문(이하 ‘박사학위논문’이라 칭한다)을 제출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본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또는 석·박사 통합과정 수료(예정)자 <개정 2017.4.27.>

② 박사학위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③ 각 전공에서 내규로 설정한 연구실적을 갖춘 자

단, 각 전공내규는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첫 번째 저자로 논문 1편 이상 게재한 자 혹은 그와 동등한 연구실적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18.11.29.>

④ 논문지도교수로부터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⑤ 기준 연구업적 달성자(전문대학원 연구업적평가 기준 50점 이상)

⑥ 논문제출 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논문제출 시한 최종학기에 지도교수의 해외연수, 신분변동, 공공성을 띤 학생의 해외연수, 해외유학, 해외근무 또는 6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장 2년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대학원 수료 후 군 입대 및 전문연구요원 복무로 논문제출 기한이 초과하였을 경우에도 군복무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제117조(논문제출 절차) 박사학위논문제출 자격을 갖춘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전기는 3월 초, 후기는 9월초까지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학위논문제출승인서(소정양식) 1통

② 박사학위청구논문(예비심사용 : 소속 전공에 제출) 5통

③ 연구실적인정서 1통

④ <삭제 2017.4.27.>

제2절 논문 예비심사 <신설 2018.11.29.>

1. (제작)석사학위

제117조의 2(심사위원회 및 심사방법) 석사학위 예비심사의 심사위원회 및 심사방법은 각 전공별 운영지침에 따른다.

2. 박사학위

제117조의 3(심사위원회) 박사학위 예비심사 심사위원회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위촉한다.

- ① 예비심사 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본교 전임교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심사위원장은 호선에 의해 선출한다.
- ② 예비심사 심사위원회는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해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 ③ 예비심사 시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제117조의 4(심사방법)

- ① 예비심사는 논문심사 진행 직전학기 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 ② 예비심사는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진행한다.
- ③ 심사위원회는 논문주제의 타당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성과 등을 엄밀히 심사하며,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당해 학기 내 완성 가능성을 판단한다.
- ④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의견을 통합하여 심사요지(예비심사보고서)를 소정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예비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논문심사에 착수할 수 있다.
- ⑥ 이외에 예비심사에 관한 사항은 각 전공별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117조의 5(평가방법) 예비심사의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은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각 평균 80점 이상, 논문심사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한다.

제3절 학위논문 심사

1. (제작)석사학위

제118조(심사위원회) 석사학위청구논문이 접수되면 논문심사 진행을 위한 논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9.>

제119조(심사위원 위촉) ① 심사위원회는 해당 전공주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 ② 심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하되, 공동지도인 경우에 심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논문지도교수도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 ④ 외부심사위원은 1인까지만 위촉할 수 있다.
- ⑤ 심사위원장은 호선에 의해 선출하며,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본조개정 2018.11.29.]

제120조(심사방법)

- ① 논문심사는 1회 이상하여야 한다.
- ② 심사는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진행하며 심사 장소는 교내로 한다.
- ③ 논문심사는 심사위원장이 지정하는 장소와 시간에 행하며, 심사 상 필요할 때는 논문 제출자에게 부분 또는 모형, 기타 재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④ 심사위원회는 각 전공에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응답 방식으로 예비심사 지적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며, 학위논문으로서 내용과 체계상의 결함 여부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논문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⑤ 논문심사는 소정의 기일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본조개정 2018.11.29.]

제121조(평가방법)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은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논문은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통과한다.

제122조(재심사) ① 논문심사에서 불합격된 자는 불합격 후 재학연한 이내에 다시 작성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논문 심사위원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123조(심사의 연기) 심사위원회에서 논문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의하여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논문심사를 보류하고 전공주임교수 및 학과장 명의로 심사학기 연기신청을 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4조(심사결과 보고) 논문의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위원장은 심사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5조(심사시기) 논문의 심사는 전·후반기 연 2회로 한다.

제126조(최종작성) 논문제출자는 제책 이전에 반드시 논문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심사위원장의 최종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박사학위

제127조(심사위원회) 박사학위 청구논문이 접수되면 논문심사 진행을 위한 논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9.>

제128조(심사위원) ① 심사위원은 전공주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에 의해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은 5인으로 하되, 공동지도인 경우에 심사위원은 5인 이상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은 3편 이내의 논문을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3편을 초과하여 심사해야할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가능하다.

④ 논문지도교수도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⑤ 5인의 심사위원 중 최소한 1인 이상은 외부심사위원으로 위촉하되,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심사위원장은 호선에 의해 선출하며,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본조개정 2018.11.29.]

제129조(심사방법)

① 논문심사는 2회 이상하여야 한다.

② 심사는 심사위원 5분의 4이상의 출석으로 진행하며 심사 장소는 교내로 한다.

③ 논문심사는 심사위원장이 지정하는 장소와 시간에 행하며, 심사에 필요할 때는 논문제출자에게 부분 또는 모형, 기타 재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은 각 전공에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응답 방식으로 예비심사 지적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며, 학위논문으로서 내용과 체계상의 결함 여부를 검

토하고, 최종적으로 논문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⑤ 논문심사는 소정의 기일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본조개정 2018.11.29.]

제130조(평가방법)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은 각각 100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논문은 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한다.

제131조(재심사) ① 논문심사에서 불합격된 자는 불합격 후 재학연한 이내에 다시 작성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논문 심사위원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132조(심사기간) 논문심사위원회는 논문심사개시 후 8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심사보고서로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3조(심사의 연기) 심사위원회에서 논문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논문심사를 보류하고 전공주임교수 및 학과장 명의로 심사학기연기신청을 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4조(심사결과보고) 논문심사가 완료되면 심사위원장은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5조(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수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논문이 이미 공표되었거나 교육부장관이 공표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36조(심사시기) 논문의 심사는 전·후반기 연 2회로 한다.

제137조(최종작성) 논문제출자는 제책 이전에 반드시 논문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심사위원장의 최종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절 학위의 수여와 취소

제138조(수여의결보고)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써 학위의 수여를 결정하고 총장에게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4.27.>

② 석사학위는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그 심사에 합격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서식에 의한 학위기를 총장이 수여한다. <개정 2017.4.27.>

③ 제작석사학위는 본 대학원 제작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학위작품 및 제작보고서 또는 제작논문을 제출하여 그 심사에 합격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서식에 의한 학위기를 총장이 수여한다. <개정 2017.4.27.>

④ 박사학위는 본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그 심사에 합격한 후 운영위원회의 학위수여 결정을 받은 자에게 별지 서식에 의한 학위기를 총장이 수여한다. <개정 2017.4.27.>

제139조(수여학위 취소) 학위를 받은 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하였을 때는 시효에 상관없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은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4.27.>

제5장 학위논문에 관한 세칙

제140조(목적) 본 내규는 대학원학위수여규정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1조(논문지도교수 배정) ① 전공주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 하에 논문지도교수 배정신청서를 1차 학기 때 제출하며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논문지도교수를 배정받을 수 있다.
② 전공내용(복합전공 등) 상 또는 지도교수의 유고(사망, 장기출장, 병가 등) 시에는 지도교수, 전공주임교수, 학과장,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공동지도교수를 배정받을 수 있다.
③ 편입생의 경우 논문지도교수 배정신청서를 3차 학기 때 제출하며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논문지도교수를 배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18.3.22.>

제142조(지도교수 변경) 지도교수의 사망, 장기출장, 병가, 그리고 전공변경 등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전공주임교수, 학과장 및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다만, 2차 학기부터는 공동지도교수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지도교수 변경 시 지도교수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도교수변경원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논문지도교수 변경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2.9.1., 2018.3.22., 2018.11.29.>

제143조(지도교수 자격)

- ① 교원임용 규정 제2조 2항에 정의된 정년트랙 교원으로 본 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는 석·박사학위논문 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다만, 교원업적평가에 관한 시행세칙 제21조 제2항에 해당되는 교원은 제외한다.
- ②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원임용 규정 제2조 2항에 정의된 정년트랙 교원을 제외한 전임교원, 교원임용 규정 제2조 제4항에 정의된 본교의 비전임교원, 타 대학교수 및 기타 논문지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경력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본 대학원 교수 1인과 공동으로 논문을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20.05.14.>
- ③ 지도교수는 정년이 2년 이상 남은 교원으로 배정한다.

[본조개정 2018.11.29.]

제144조(동전) <삭제 2018.11.29.>

제145조(논문지도) ① 논문지도 시 지도교수 한명 당 한 학기에 졸업논문을 5편을 초과하여 지도할 수 없다. 단, 해외대학 합작과정 학생의 졸업 논문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7.4.27., 2018.11.29.>

- ② 한 학기에 졸업논문을 5편 초과하여 지도해야 할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18.11.29.>

제146조(논문지도비) 학위논문지도를 위한 논문지도비로 약간의 금액을 교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7조(학위논문)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학위논문(또는 작품)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 ① 석사학위논문 : 전공분야에 대한 견실한 기본지식이 바탕이 되고, 논문의 주제가 학술적 타당성이 있게 체계적으로 조직되고 서술되어야 한다. 단, 예술공학분야 및 연계세부전공은 논문에 창작성 있는 졸업작품을 추가할 수 있다.
- ② 제작석사학위 졸업작품 : 전공분야에 대한 견실한 기본지식이 바탕이 되고, 작품의 주

제가 체계적이며 조직적으로 표현된 작품으로 세부사항은 전공운영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8.3.22.>

1. <삭제 2018.3.22.>

2. <삭제 2018.3.22.>

③ 박사학위논문 : 논제의 취급분야에 대한 충분한 전문지식을 소지하고 있고 독자적 학술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며, 기존의 지식 또는 기술을 상당한 정도 수정, 보완 또는 확대하고 논지가 명확한 내용이어야 한다.

제148조(심사위원 교체금지) 전조 제118조와 제127조의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논문심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교체할 수 없다. 그러나 심사위원이 질병, 출국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석사학위 심사위원의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으며, 박사학위심사위원이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4.27., 2018.11.29.>

제149조(논문심사) ① 석사 또는 박사학위논문의 심사는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제작석사는 작품평가와 구술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논문심사(작품평가)를 행함에 있어서는 심사 이전에 반드시 심사위원의 참석 하에 논문(작품 및 제작보고서, 제작논문) 제출자의 공개발표를 가져야 한다.

③ 논문심사 중 논문(작품 및 제작보고서, 제작논문)제출자의 출석여부는 심사위원회의 결의에 다르며 구술시험은 논문(작품 및 제작보고서, 제작논문) 제출자를 출석시켜 공개로 행한다.

제150조(학위논문제출부수) ① 학위논문심사에 합격된 학위청구자는 완성된 학위논문 책본(석사·박사 공히 하드카바 5부)을 심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제출논문 책본(작품 및 제작보고서, 제작논문) 중 1부에는 반드시 심사위원의 인정 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151조(학위논문등록) 학위논문심사에 합격된 학위청구자는 학술정보원 홈페이지에 (<https://library.cau.ac.kr/>) 접속하여 등록하고 논문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9.>

제152조(학위논문작성 및 제책) 학위논문작성 및 제책 기준을 별도로 정한다.

제6장 외국인 학생에 관한 세칙

제153조(연구생) 외국인학생은 본 대학원 규정에 의거하여 연구생으로 청강할 수 있다.

제154조(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에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학생은 본 대학원 논문제출자격시험 시행내규에 규정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155조(학칙 및 제반내규의 적용) 외국인학생에 대한 본 내규 이외의 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교 학칙 및 제반내규를 적용한다. <개정 2018.3.22.>

제7장 대학원 박사(석사)후 과정 운영 세칙

제156조(목적) 이 내규는 학칙 제89조에 따라 박사(석사)후과정 운영 및 박사(석사)후과정 연구원 (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의 선발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7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하는 박사(석사)후과정 연구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4.27.>

제158조(운영학과) 박사(석사)후과정을 설치할 수 있는 전공은 이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연구기금을 확보한 전공에 한한다.

제159조(연구원자격) 연구원은 국내외에서 박사(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

제160조(연구원의 정원) 연구원의 정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17.4.27.>

제161조(지도교수) 연구원의 지도교수는 본 대학교 전임교수이어야 한다.

제162조(선발절차) 연구원은 전공의 교수회의에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선발한다.

제163조(구비서류) 연구원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매학기 2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신청서(소정양식) 1부.
- ② 지도교수 동의서 1부.
- ③ 박사학위(예정)증명서 1부.
- ④ 성적증명서 1부.
- ⑤ 연구계획서 1부.
- ⑥ 연구실적목록 1부.
- ⑦ 학과장동의서 1부.

제164조(연구기간) 연구원의 연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제165조(연구비) 연구비는 당해 전공에서 확보한 기금에서 능력(박사급 혹은 석사급)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한다.

제166조(강좌담당) 연구원은 본 대학교 비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매학기 주당 3시간 이내의 1과목 강좌를 담당할 수 있다. <개정 2018.11.29.>

제167조(최종보고서) 연구원은 연기간이 끝나는 학기말까지 최종보고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1년 이내에 학술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8장 대학원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 세칙

제168조(목적) 이 내규는 병역법 및 동 시행령에 의한 중앙대학교 대학원소속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의 임용과 복무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9조(자격) 석사학위 이상 취득하고 자연계 박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있는 자로서 선발시험에 합격하고 의무복무기간(3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18.3.22.>

제170조(임용절차) 임용은 본인의 지원과 대학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용한다.

제171조(의무복무기간) 의무복무기간은 박사과정 수료 후 첫 학기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18.3.22.>

제172조(임용시기) 임용시기는 매 학기 초로 한다.

제173조(복무) ① 전문요원의 소속은 대학원으로 하고, 해당전공주임교수 및 학과장의 감독을 받아 연구활동에 종사한다.

② 해당전공주임교수 및 학과장은 전문연구요원에게 연구과제를 부여하며, 연구요원은 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임용기간만료 15일전에 연구결과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4.27.>

③ 해당전공주임교수 및 학과장은 출근부를 비치하여 전문연구요원의 복무를 관리한다.

④ 박사과정 수료 후 첫 학기에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며, 전문연구기관 3년간의 의무복무를 병역필로 처리한다. <개정 2018.3.22.>

제174조(자격상실) 전문연구요원이 무단으로 결근할 경우에는 복무지 이탈로 간주하여 전문연구요원 임용을 취소하고, 총장은 이를 병무청에 즉시 통보한다.

제175조(보수) 전문연구요원의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제176조(기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장 5년제 학·석사학위 연계과정 세칙

제177조(목적) 이 내규는 5년제 학·석사연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8조(모집단위 및 인원) ①. 모집단위 및 모집전공 : 전 전공. 단, 전공의 사정에 따라 모집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모집인원 :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의 30%범위 내에서 모집한다.

제179조(지원자격 및 신청) 학·석사연계과정 지원자격 및 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사학위과정 6차 학기까지 총 106학점(문과대, 자연대, 법대는 6차학기까지 116학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5년제는 8차 학기까지 총 144학점) 이상 취득하고 전공과목 평균평점이 3.3 이상인 자로 한다. 단 6차 학기 이후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② 전공주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③ 학사학위과정의 주 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과 관련된 전공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단, 학과간 협동과정은 제외한다.

④ 복수지원은 불허하며, 1개 전공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⑤ 편입생도 1~4학의 자격을 충족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⑥ 학·석사연계과정 지원서는 학부 소속 학과장 및 대학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0조(제출서류) 5년제 학·석사연계과정 지원서 1부

제181조(전형방법) ①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해당 전공별로 정하여 전

형할 수 있다.

- ② 학·석사연계과정의 전형은 6차 학기말에 실시한다.
- ③ 최종 선발자 발표는 7차 수강신청기간 직전에 한다.

제182조(수업연한) 학·석사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5년으로 하며, 학위과정별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를 초과한 자는 중도포기 자로 간주한다.

- ① 학사학위과정 3.5년으로 한다.
- ② 석사학위과정 1.5년으로 한다.

제183조(수강신청) ① 학·석사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해당 대학원 전공과목 중 6학점까지 선택하여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학부에서 수강신청한 대학원 선이수 과목의 이수구분은 전공과목으로 인정하며, 석사과정 졸업이수 학점으로도 인정한다.

제184조(학부졸업, 대학원 입학 및 혜택) ① 학·석사연계과정에 선발된 자의 학부 졸업 이수 학점은 124학점(문과대, 자연대, 법대는 134학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5년제는 154학점)으로 하며,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 등을 면제할 수 있다.

- ② 학부 졸업과 동시에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하여야 한다.
- ③ 대학원 입학과 동시에 각 전공의 조교 채용 시 우선권을 부여한다.

제185조(등록 및 취소) ① 학·석사연계과정으로 학부를 졸업하는 자는 해당 대학원에 신입생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대학원 입학 이전에 연계과정을 중도 포기한 자, 학부 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 대학원 신입생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학부 졸업이 인정되지 않고 8차 학기 등록을 하여야 하며, 소속 단과대학의 졸업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③ 입학 후 첫 학기는 군입대, 병가를 제외하고는 휴학을 할 수 없다.
- ④ 석사과정 입학 후 3차 학기 내에 수료학점 미 취득자는 학점등록을 불허하며, 4차 학기 정규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86조(행정절차 및 사무분장) 학·석사연계과정과 관련된 행정절차 및 부서별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 ① 대학원 : 지원서교부 및 접수, 선발자 결정 및 최종합격자 명단 통보
- ② 교무처 : 학적관리
- ③ 전 공 : 지원자 전형

제187조(준용) 이 내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학칙 및 관련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3.22.>

제10장 석·박사 통합과정 [본장 신설 2017.4.27.]

제188조(용어의 정의) ① 석·박사 통합과정이라 함은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이 통합된 과정으로, 석사학위과정으로 입학하여 석사학위 수여 및 박사학위과정 입학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② 석·박사 통합과정은 해외대학합작과정을 위한 제도로 편입생만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③ 해외대학합작과정을 통한 편입 절차는 본 내규 제2장의 편입학 규정을 준용한다.

제189조(지원자격 및 모집시기) ① 지원자격은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편입학 자격과 동일한 자격으로 한다.

② 석·박사 통합과정 편입생 모집은 2017학년도부터 실시하며, 시행 시기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190조(제출서류) 석·박사 통합과정 편입학 지원자는 본 내규 제2장 편입학 전형 중 제20조 (구비서류)의 석사·제작석사학위과정 서류에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1조(전형방법 및 평가기준) 석·박사 통합과정 편입학 전형방법 및 평가기준은 본 내규 제2장 편입학 전형 중 제23조, 제26조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제192조(수업연한) 석·박사 통합과정 편입생의 본 대학원에서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193조(재학연한) 석·박사 통합과정 편입생의 본 대학원에서의 재학연한은 7년으로 한다.

제194조(수료인정) 석·박사 통합과정 편입생은 본 대학원에서 6회 이상 등록을 필하고, 편입학 인정학점을 포함하여 60학점 이상 취득해야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195조(박사학위과정 인정) ① 석·박사 통합과정 편입생은 본 대학원에서 2회 이상 등록을 필하고, 편입학 인정학점을 포함하여 30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박사학위과정에 진입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의 박사학위과정에 진입한 것으로 인정된 자에 대한 학적관련 제 증명서 등을 발급할 때에는 박사학위과정 학생으로 발급한다.

제196조(학위수여 요건) 본 내규 제194조의 석·박사 통합과정 수료 요건을 갖추고, 제108조의 학위수여 요건을 갖춘 자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제197조(석사·제작석사 학위수여 요건) 고등교육법 제35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 각 항의 경우 석사 또는 제작석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① 석·박사 통합과정에 있는 자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하거나 중도에 퇴학하는 자로서 제 108조의 학위수여 요건을 갖춘 자에게 석사 또는 제작석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11.29.>

② 석·박사 통합과정에 있는 자가 중도에 퇴학을 희망할 경우 중도포기원서를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퇴학이 가능하다. <개정 2018.11.29.>

③ 제195조의 석·박사 통합과정 수료를 인정받은 자 중 제108조의 학위수여 요건을 갖춘 자에게 석사 또는 제작석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198조(학사관리) 교과과정의 이수, 학위논문 제출자격 종합시험 및 학위논문 심사 등 제반 학사에 관한 사항은 석사·제작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의 관련 내규를 적용한다.

- ① (시행일) 이 내규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시행일) 이 내규는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시행일) 이 내규는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④ (시행일) 이 내규는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⑤ (시행일) 이 내규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⑥ (시행일) 이 내규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⑦ (시행일) 이 내규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⑧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⑨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⑩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 6. 7.>

이 개정 내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 4. 27.>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 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한다.

② 이 개정 내규 중 제56조 제2항 및 제83조 제2항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18. 3. 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8. 11. 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한다.

부 칙<개정 2019. 4. 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개정 내규 중 제83조 제5항 직계 장학금의 개정 사항은 2019학년도 1학기 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20.05.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개정 내규 중 제82조(지급대상) 개정 사항은 2020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21.05.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개정 내규 중 인공지능 첨단세미나에 대한 사항은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

용한다.

② 이 개정 내규 중 제83조 제5항 직계장학금의 개정 사항은 2020학년도 2학기 장학생 선발부터 적용한다. 단, 제83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개정 사항은 2021학년도 1학기 장학생 선발부터 적용한다.